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및 조건

모집 분야 및 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사 0명 - 한국사회이해 강사 0명
강의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정보통신관)
강사료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2. 전형 일정

서류 접수	- 2025. 1. 17.(금) ~ 1. 30.(목) 18:00까지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 2. 3.(월) (1차 서류 합격자 한해 시강 및 면접 실시)
2차 면접	- 2025. 2. 10.(월) (면접 시간 개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12.(수)

3. 모집 전형 및 원서 접수

접수 방법	① E-mail 접수(kwuiec@kwu.ac.kr) * 메일 접수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지원서-성명' 파일명: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_성명' ※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②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22, 정보통신관 4106호(국제교류처)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전화: 062)950-3932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각종 증빙자료(한국어교원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4. 강사 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 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 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